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이한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4-116 발의연월일: 2024. 9. .

발 의 자:이한동, 강동오, 고병준,

권인순, 남해석, 백남환,

오옥자, 이상원, 채우진,

최은하, 한선미

1. 개정이유

유사한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 공제 등의 가입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 공제등의가입조례」를 통폐합해 보험·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고,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 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」로 정비(안 제명)
- 나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.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, 보험료의 지급, 보험금의 청구·변상 및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등에 대해 규정(안 제3조~제6조)

3. 관계법령

- 1)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
- 2) 「인감증명법 시행령」 제20조
- 4. 조 례 안 : 붙임
- 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9. 20. ~ 9. 26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• 공제 등의 가입 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 제36조 및 「인감증명법 시행 령」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 당공무원의 보험·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"이란 주민등록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주민등록증 발급업무,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·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 - 2. "인감업무 담당공무원"이란 인감의 신고(변경신고 포함)업무, 인감 증명 발급업무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

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.

- 제3조(보험의 가입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·공제 등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에 가입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.
- 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5조(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수 있다.
- 제6조(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, 보험금액, 보험료, 보험기간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 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·정비하여야 하며, 보험증권 및 관계 서

류를 보관 • 관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· 공제등의가입조례」는 폐지한다.
- 제3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·공제등의가입조례」의 규정에 따라이루어진 보험의 가입, 보험료의 지급, 보험금의 청구·변상 및 그에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·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안 제4조(보험료의 지급)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최영국
연 락 처	02-3153-8305

【관계법령】

주민등록법

[시행 2024. 6. 27.] [법률 제19841호, 2023. 12. 26., 일부개정]

제36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인감증명법 시행령

[시행 2022. 7. 12.] [대통령령 제32790호, 2022. 7. 11., 타법개정]

제20조(보험·공제 등에의 가입)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(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)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